

오산시 담당동 지원규정

제정	1996년	4월	1일	훈령	제101호
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따른 오산시 보고통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개정	2002년	2월	4일	훈령	제160호
개정	2003년	7월	2일	훈령	제168호
개정	2007년	4월	3일	훈령	제189호
개정	2007년	11월	21일	훈령	제197호
개정	2010년	4월	26일	훈령	제218호
개정	2010년	12월	1일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년	2월	17일	훈령	제224호
일부개정	2013년	5월	31일	훈령	제232호
일부개정	2014년	7월	30일	훈령	제241호
일부개정	2015년	11월	5일	훈령	제250호
일부개정	2018년	6월	12일	훈령	제276호
일부개정	2021년	1월	4일	훈령	제295호
일부개정	2023년	12월	29일	훈령	제320호

제1조(목적) 시의 관·과·소로 하여금 동행정을 지원토록하고 동담당 국장·관·과장·소장을 지정하여 동행정에 대한 행정지도로 지방행정의 향상과 발전, 책임행정의 구현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제2조(담당) 관·과·소의 담당동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 관·과·소의 지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제3조(행정지도) ① 동 담당 관·과장·소장은 담당동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1. 동 공통적인 지도·확인사항 및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2.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파악
3. 기타 업무지도

② 동을 담당하는 관·과·소에서는 동담당 주무 부서장을 중심으로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제4조(결과보고) 동 담당 관·과장·소장은 제3조에 의한 행정지도를 하였을 때에 그

오산시 담당동 지원규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제5조(담당동 지원) ① 동을 담당하는 국장·관·과장·소장은 동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② 삭제 <2002. 2. 4>

제6조(동장협조) 동장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동담당 국장·관·과장·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12. 1. 17>

제7조(소속직원 지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4 훈령 제1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 훈령 제1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 훈령 제1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1 훈령 제1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6 훈령 제21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 훈령 제21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오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1. 17 훈령 제2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1 훈령 제2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30 훈령 제24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5 훈령 제25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2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4 훈령 제2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훈령 제3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12. 29>

관 · 과 · 소 담당동

동 별	책임관	동지원 관 · 과 · 소	
		주무부서장	담당부서
중앙동	자치행정 국 장	자치행정 과 장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대원1동	복지교육 국 장	희망복지 과 장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대원2동	기획예산 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남촌동	경제문화 국 장	지역경제 과 장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신장1동	도시주택 국 장	도시정책 과 장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신장2동	보건소장	보건행정 과 장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중앙도서관
세마동	시민안전 국 장	안전정책 과 장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안전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초평동	환경 사업소장	환경과장	환경과, 청소자원과, 수도과,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